의안번호	2206112
의 뢰 인	이용우 의원
회 답 일	2024. 12. 23.
추계번호	24B5589

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대표 등이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칠 경우, 지원협의체 구성·운영을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,000만원(연평균 800만원)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지원협의체 구성·운영 (안 제21조 및 제23조의2)	8	8	8	8	8	40	8

주: 1. 환경부의 주민대표 등과의 협의체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지원협의체 구성·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1조(주민지원사업) 제1항	시장・군수(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(이하 “주민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・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제23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 협의를 거쳐야 함	의무규정
	안 제23조의2(지원협의체) 신설	지원협의체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대표 또는 지역의 특별자치시・특별자치도・시・군・구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・특별자치도・시・군・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(제1항)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자 2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(實刑)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.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의무규정
		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21조(주민지원사업) 제1항	○	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	안 제23조의2(지원협의체) 신설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❑ 주민지원사업 수립 시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(안 제21조제1항 및 안 제23조의2)

○ 현행법은 시장・군수(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)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영산강・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, 개정안은 추가로 주민대표 등이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임

○ 환경부에 따르면, 환경부 내 주민대표 등과의 협의체 구성 사례로 한강, 낙동강, 금강, 영산강·섬진강 수계자문위원회 등의 운영 사례가 있는데, 해당 자문위원회의 2023년 운영 사례는 다음과 같음

[표 2] 환경부 내 주민대표 등과의 협의체 구성·운영 사례(2023년)

수계	자문위원회 구성원수(명)	자문위원회 중 민간위원수(명)	회의 운영 횟수(회)	참석비 집행 기준
한강	24	20	3	- 수당: (대면)15만원, (서면)10만원 - 여비: 5만원
낙동강	25	20	1	
금강	22	17	1	
영산강·섬진강	22	16	2	

자료: 환경부

○ 개정안은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지만,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, 지원협의체 구성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,000만원(연평균 800만원)으로 추정

- 협의회는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그중 민간위원은 20명으로 하며, 회의를 1년에 2회 개최한다고 가정
- 연간 운영비: 20명 × 20만원 × 2회 = 800만원

[표 3] 지원협의체 구성·운영 관련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지원협의체 구성·운영	8	8	8	8	8	40	8

주: 1. 환경부의 주민대표 등과의 협의체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지원협의체 구성·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환경부의 주민대표 등과의 협의체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지원협의체 구성·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배아형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assembly.go.kr